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신청서 작성 방법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목차

I. 정보공개 제도 개요

II. 정보공개 심의기준

III. 정보공개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활용법

IV. 점검사항

I. 정보공개 제도 개요

1. 정보공개 범위
2. 정보공개 절차

-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1. 28.>

정보공개 제도 개요 _공개범위

▪ 공개 범위

- 기본공개 : 사업장별로 대국민 공개
- 개별공개 : 개별청구자에게만 공개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업장 공개

구분	대국민 공개	개별공개
공개 대상 (업체)	△ 유해한 화학물질 취급업체 ①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지정물질 또는 유해인자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독성가스 및 1%이상 함유 혼합물	개별청구자
공개 정보	△ 제품정보(제품명, 혼합물 여부, 유해화학물질 여부) △ 물질정보(물질명·CAS No., 유해화학물질 여부, 연간 입고량, 연간사용·판매량)	△ 제품정보 (제품명칭, 제품안에 포함된 성분, 성분별 함량, 유해화학물질 여부) △ 수출정보, 성분보유자정보 등 통계조사표 기재사항
공개 방법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 공개	공개청구자에게 개별통지

정보공개 제도 개요 _공개범위

▪ 기본 공개

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명	OO ㈜	대표자 작성자 전화번호	홍길동 000-000-0000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	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대기배출시설종류		수질배출시설종류	

본 정보는 작성자인 OO㈜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현황	최대 보관량(범위)	
	최대 저장량(범위)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4~18년 [ ]건
사업장 비상연락번호		000-000-0000

정보공개 제도 개요 _공개범위

화학물질 취급현황

제품명	제품정보	
	제품구성	유해화학물질여부
황산(60%) ☐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신너-1 ☐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 ▣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물질명 (CAS No.)	유해화학물질 여부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판매량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톨루엔 (108-88-3) ☐	▣	☐	☐	☐	▣	02	02
황산 (7664-93-9) ☐	▣	☐	☐	☐	▣	03	02
■■■■ ▣	☐	☐	☐	☐	☐	01	01

연간 입고량 :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연간 사용·판매량 : 사용, 판매, 수출

취급량 범주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20 ~ 200
03	0.5 ~ 1.0	08	200 ~ 1,000
04	1 ~ 2.5	09	1,000 ~ 5,000
05	2.5 ~ 5.0	10	5,000 이상

정보공개 제도 개요 _공개범위

- 개별 공개

화학물질 취급현황

제품명	구성성분			취급시설 현황	
	성분명	함량(%)	유해화학물질 여부	보관·저장 형태	최대 보관·저장규모
신너-1 ☐ ☐ 유해화학물질 ▣ 혼합물,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벤젠 (71-43-2) ☐ 톨루엔 (108-88-3) ☐ 할로겐화합물 ▣ ■■■■ ▣	30% ☐ 30% ☐ 10% ☐ 30% ☐	▣ ▣ ☐ ☐	☐ 보관시설(창고) ☐ 저장시설(탱크) ▣ 해당없음	02
■■■■ ▣ ☐ 유해화학물질 ▣ 혼합물,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벤젠 (71-43-2) ☐ 톨루엔 (108-88-3) ☐ 할로겐화합물 ▣ 아세톤 (67-64-1) ☐	■% ▣ ■% ▣ ■% ▣ ■% ▣	▣ ▣ ☐ ☐	☐ 보관시설(창고) ☐ 저장시설(탱크) ▣ 해당없음	02

제품·물질의 명칭이 영업비밀인 경우,
① 대안의 명칭(총칭명) (예: 할로겐화합물, 시안화합물 등)으로 표시
② 대안의 명칭(총칭명)으로 표시할 경우,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면 공란 또는 “영업비밀” 등으로 표시

정보공개 제도 개요 _공개범위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화관법 위반사업장 공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 또는 명령 위반사실

위반일자	위반내역
OOOO.O.OO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내역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4~18년 [ ] 건
발생일자	사고 개요
OOOO.O.OO	

정보공개 제도 개요 _공개범위

- 화관법 위반사업장 공개

화학사고와 관련된 화학물질 취급현황

물질명 (CAS No.)		유해화학물질 여부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판매량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톨루엔 (108-88-3)	□	▣	□	□	□	▣	02	02
황산 (7664-93-9)	□	▣	□	□	□	▣	03	02
■■■■	▣	□	□	□	□	□	01	01

연간 입고량 :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연간 사용·판매량 : 사용, 판매, 수출

취급량 범주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20 ~ 200
03	0.5 ~ 1.0	08	200 ~ 1,000
04	1 ~ 2.5	09	1,000 ~ 5,000
05	2.5 ~ 5.0	10	5,000 이상

정보공개 제도개요 _ 공개 절차

▪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 공개 절차	비 고
조사 결과표 제출	
제4조 제1항	- 조사한 해 12월 31일 까지 (**규칙** 별지 제4호2 서식)
제2조 제1항	- 개별공개청구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개별공개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에 산입하지 않음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 심의 기간, 안건상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 심의 결과 통보 (**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 이의신청,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소명서 미접수 시 정보공개, 30일 이내 - 소명자료 보완요청 가능(기한 없음)
제7조 제3항	- 안건상정,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소명자료 보완요청기간은 45일에 산입하지 않음
제4조 제3항, 제7조 제4항, 제5항	- 심의 결과 통보, 즉시 - 정보공개, 30일 이내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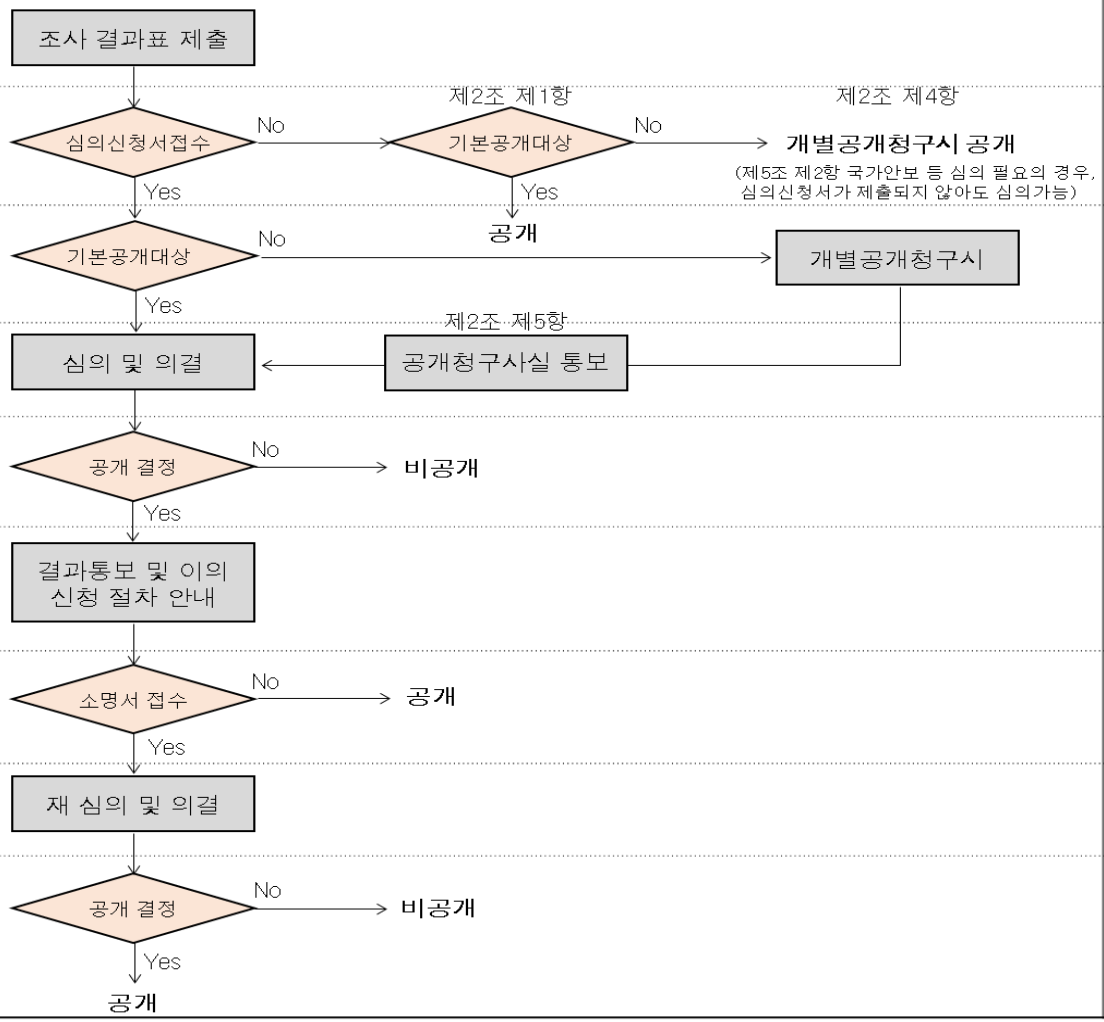

정보공개 제도개요_ 공개 절차

- 화학물질 취급자가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절차		비 고
제3조 제1항	정보공개 계획 통보	정보공개 계획 통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 제1항	심의신청서접수 — No → 공개 Yes ↓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규칙 별지 제4호2 서식)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심의 및 의결	안건상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제4조 제3항	공개 결정 — No → 비공개 Yes ↓	
제6조 제1항	결과통보 및 이의 신청 절자 안내	심의 결과 통보 (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소명서 접수 — No → 공개 Yes ↓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소명서 미 접수시 공개(30일 이내)
제7조 제3항	재 심의 및 의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제6조 제5항	공개 결정 — No → 비공개 Yes ↓ 공개	심의 결과 통보 및 공개(30일 이내)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II. 정보공개 심의기준

1. 비공지성
2. 비밀 관리성
3. 경제성, 유용성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정보공개 심의기준

- 영업비밀 등 비공개 요청

<화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정보공개 심의기준

-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4]

[비공지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① 관련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② 고용인 및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나. 자료보호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비밀 관리성]

가. 자료보호 신청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①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②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경제성·유용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①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

②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

나.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다. 자료보호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①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

② 자료보호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

라. 자료보호 신청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기본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정보공개 심의기준

- 공통 사항

세부 검토내용
1. 비공개 요청한 심의신청 항목, 요지, 이유서 및 영업비밀 입증서류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제품(물질)명칭, 제품 내 성분명칭, 제품 내 성분별 함량, 취급규모 등 비공개 요청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했는지를 확인한다.
3. 제품(물질)명칭 등 영업비밀 정보에 대해 비공지성, 경제성·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품(물질)명칭을 대안의 물질명칭(총칭명칭)으로 공개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대안의 물질명칭으로 공개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비공개할 수 있다.
4. 사업장 일반정보, 화학사고발생건수, 보관·저장시설의 위치 및 최대 규모, 제품(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 여부, 물질취급량 범주를 비공개 요청했는지 확인하고, 이 항목은 영업비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보공개 심의기준_비공지성

세부 검토내용
1. 비공개 요청한 제품(물질) 명칭이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국내·외 학술 논문 등에 공개되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정보가 공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공개 요청한 제품(물질)명칭이 유사·동종업계에서 특정용도(예; PHMG 등 살균제, 배관세척용 염산 등), 성능, 및 특정 생산공정 등에 사용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인지를 확인한다.
4. 기존에 알려진 정보라도 해당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공정에 적용되는 등 타인이 알지 못하는 당사의 노하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5. 당사의 영업비밀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확인한다.
6. 제조, 구매, 수입하여 다른 사업장에 판매되는 제품이 홍보·광고성으로 제품(물질) 명칭이 인터넷 또는 제품을 구매하는 업체 등에 공개되었는지 확인한다.
7. 제품 명칭에 숫자나 기호 등으로 제품 내 특정 성분의 함량 또는 제조사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한다.
8.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부에서 제조하여 사용하는 제품 또는 중간제품의 경우 제품 명칭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타당성 입증여부를 확인한다.
9.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화학물질 관련 국내·외 정책자료(공개자료 등),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등

정보공개 심의기준_비밀관리성

세부 검토내용
1. 해당정보의 비밀성 보호를 위해 비밀관리자 목록을 정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였는지 또는 출입제한 조치하였는지 등의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한다.
2. 자사는 비밀관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하여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보안안내 및 비밀관리에 필요한 자료(예;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및 비밀유지 약정 등)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3. 회사 내에서 비밀정보와 무관한 직무담당자에게 출입 등 접근을 제한하거나,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지하는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4. 자사 비밀정보(서류, 전자문서 등)의 복제물 및 비밀표시(대외비 등) 등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구매, 제조, 수입하여 다른 사업장에게 판매되는 제품이더라도 특정사업장의 주문을 받았다는 주문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 등의 비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6. 내·외부인의 출입제한 및 구역 설정 등 물리적 보안조치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등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7. 외부 방문자는 비밀관리자로 선정된 직원과 동행하는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하는 등 비밀관리 노력을 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8. 영업비밀 정보(제품, 원료, 촉매제 등)에 암호형식의 라벨을 붙이는 등 비밀관리 노력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빙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9. 전자데이터로 관리되는 경우, 컴퓨터의 별도 폴더에 보관되어있는지 또는 시스템의 비밀번

정보공개 심의기준_경제성·유용성

세부 검토내용
1. 특정용도 및 생산공정 등에 사용되는 영업비밀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자사의 경제적 침해 정도와 경쟁사가 이익 등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경제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국내·외 특허출원을 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는 비공지성을 만족할 수 없다.
3. 객관적 또는 사회적으로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예; 사기행위, 결함제품, 위법한 사업계획, 이중장부 등은 제외)이여야 하고, 생산방법, 판매방법, 연구개발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인지를 확인한다.
4. 제조 노하우, 실험데이터, 연구보고서, 고객명부, 연구개발 중 축적된 결과 데이터 등 유용성이 있는 정보인지 확인한다.
5. 공개된 정보가 추가 결합되어 변형된 정보가 노력과 비용이 투여되었는지 또는 경쟁적인 이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6. 유사 동종업계에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제품(물질)을 비교하여 경제적 가치와 독창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7. 초기 개발비용, 유지 또는 관리인력 등 해당정보를 개발하거나 취득하는데 특별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확인한다.

III. 정보공개심의신청서작성지원 프로그램

1. 개요
2. 작성절차 및 제출확인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프로그램 개요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CDR)
작성 지원 프로그램

①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② 간편한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과 심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

③ 윈도우 응용프로그램 형태(Stand Alone)로 개발되어 사업장 정보 보안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통계조사결과 자료 다운(엑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스템 로그인
(http://www.narastat.kr/chemdata2019)

제출완료버튼 누르기

① 일반사항

② 제품취급현황 다운로드

프로그램 절차

① 작성절차 단계별 표시

②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저장 후 다음 단계 진행가능

③ 유효성 검사 후 부적합한 경우 검토사항에 건수가 표시
3-1 자세한 오류사항은 오류메세지 참고 하여 수정
※ 사업장 일반의 경우만 프로그램 수정불가해서 엑셀 수정 필요

3-1

④ 작성 중 또는 작성 완료 후 서식 출력 및 다운로드
※ 작성 중에 출력할 경우 "작성중" 워크마크삽입

⑤ 매뉴얼-해당 페이지 작성과 관련된 매뉴얼 표시
※ 유효성확인 에러 사항 발생 시 매뉴얼 참고

프로그램 _사업장 입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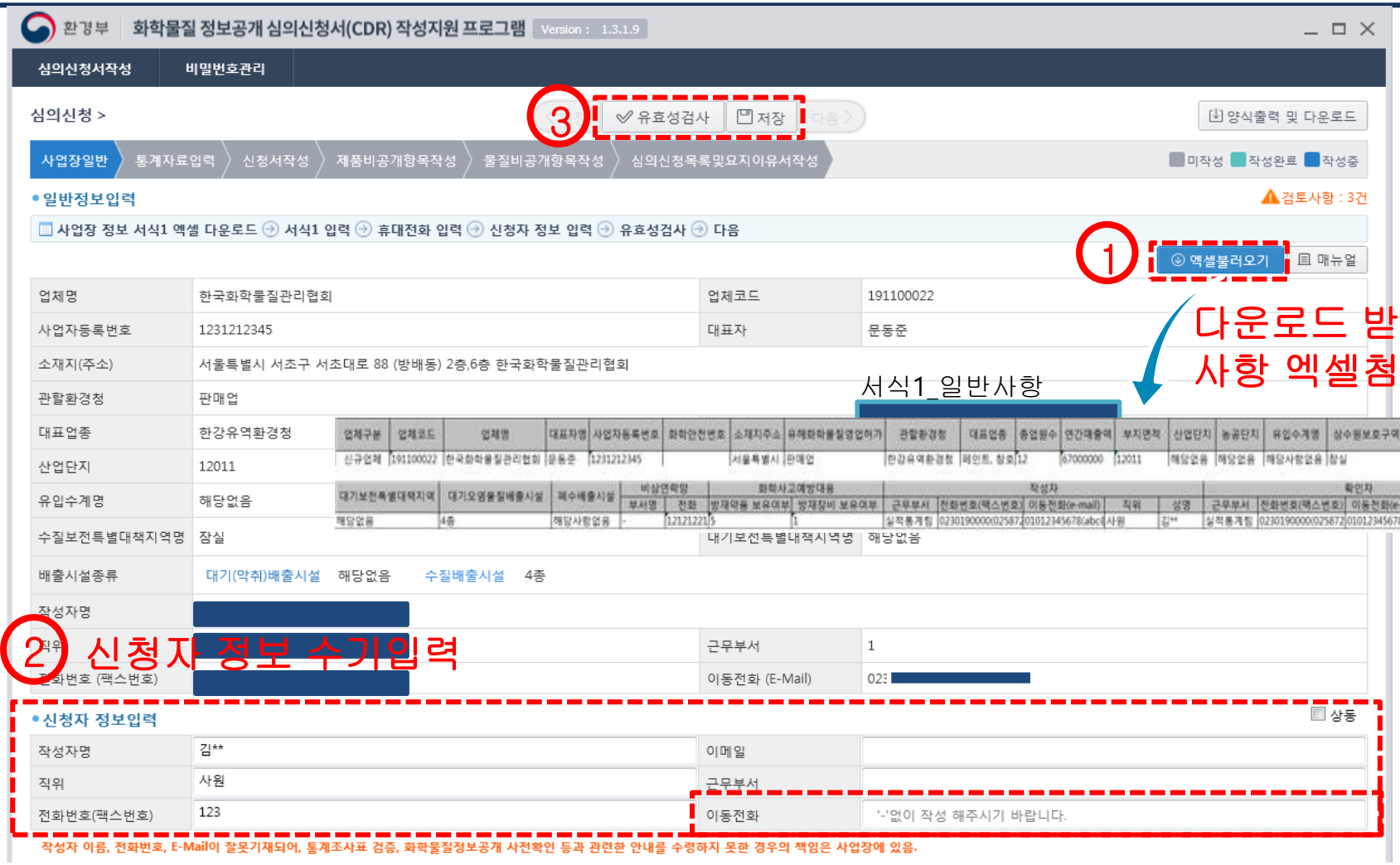

※ 작성 후 꼭 유효성 검사를 눌러야 저장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

프로그램_ 제품,물질 취급정보 입력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심의신청 > 심의신청서명

이전 | 유효성검사 | 저장 | 다

사업장일반 > 통계자료입력 > 신청서작성 > 제품비공개항목작성 > 물질비공개항목작성 > 심의신청목록및요지이유서작

• 통계자료 입력

제품 취급현황 서식2 엑셀 파일 다운 → 서식2 엑셀파일 입력 →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정 → 신청자 정보 입력 → 유효성

제품취급현황 | 구성성분정보 | 0/0

	제품번호	제품구분	제품명	용도		제품구성	제품형태
				용도	기타용도		
1	1-1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AA-29B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2	1-2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AA-49B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3	1-3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AA-59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4	1-4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AA-61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5	1-5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AA-70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6	1-6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AA-71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7	1-7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TA-40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8	1-8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TA-41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9	1-9	제조 또는 수입 화학제품	TA-42	전자부품용재료		혼합물질	액체

심의신청 > 심의신청서명

이전 | 유효성검사 | 저장 | 다음 | 양식출력 및 다운로드

사업장일반 > 통계자료입력 > 신청서작성 > 제품비공개항목작성 > 물질비공개항목작성 > 심의신청목록및요지이유서작성

미작성 | 작성완료 | 작성중

• 통계자료 입력

제품 취급현황 서식2 엑셀 파일 다운 → 서식2 엑셀파일 입력 →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정 → 신청자 정보 입력 → 유효성검사 → 다음

제품취급현황 | 구성성분정보 | 0/0 | 엑셀불러오기 | 매뉴얼

	제품번호	제품명(상품명)	성분일련번호	CAS 번호	물질명	순도 및 함량	제조구분
1	1-1	AA-29B	1	872-50-4	1-Methyl-2-pyrrolidinone ; I	91	
2	1-1	AA-29B	2		성분정보없음	9	
3	1-2	AA-49B	1	872-50-4	1-Methyl-2-pyrrolidinone ; I	85	
4	1-2	AA-49B	2		성분정보없음	15	
5	1-3	AA-59	1	872-50-4	1-Methyl-2-pyrrolidinone ; I	91	
6	1-3	AA-59	2		성분정보없음	9	
7	1-4	AA-61	1	872-50-4	1-Methyl-2-pyrrolidinone ; I	82	
8	1-4	AA-61	2		성분정보없음	8	
9	1-5	AA-70	1	872-50-4	1-Methyl-2-pyrrolidinone ; I	91	

① 제품취급현황 엑셀 파일 첨부
(시트1)제품취급현황 (시트2) 구성성분정보

(서식2)제품취급현황 및 구성성분정보

제품번호	제품구분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구성	제품형태	단위
			용도	기타용도			
2-1	[2]제품 제조용 원료/부원	DS330	[2]흡수 및 흡착제(Absorbents a		[2]혼합물질	[2]액체	[1]ton
2-2	[2]제품 제조용 원료/부원	AP727	[2]흡수 및 흡착제(Absorbents a		[2]혼합물질	[2]액체	[1]ton
2-3	[2]제품 제조용 원료/부원	DJA70	[2]흡수 및 흡착제(Absorbents a		[2]혼합물질	[2]액체	[1]ton

입고량				출고량					나노물질 포함	보관·저장시설 현황			성분확인 근거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보관·저장형태	최대규모(종량:톤)	시설 수량(개)	
0	0	71.67	2	71.67	0	0	2	0.00	[3]해당없음	2	6	2	[2]MSDS
0	0	122.43	0	122.43	0	0	0	0.00	[3]해당없음	3	1	1	[2]MSDS
0	0	14	0	14	0	0	0	0.00	[3]해당없음	3	1	1	[2]MSDS

(서식2)제품취급현황 및 구성성분정보

제품번호	제품명(상품명)	성분일련번호	cas 번호	물질명	순도 및 함량	제조구분
2-1	DS330	1	61181-29-1	Dodecyl methacry	17.5	
2-1	DS330	2	67-63-0	2-Propanol;	0.75	
2-1	DS330	3	7732-18-5	Water;	81.75	
2-10	HN500W	1	61181-29-1	Dodecyl methacry	18	
2-10	HN500W	2	7732-18-5	Water;	82	
2-11	복합유제	1	25322-68-3	α-Hydro-ω-hydro	5	
2-11	복합유제	2	9004-96-0	(Z)-α-(1-Oxo-9-oc	10	
2-11	복합유제	3	7732-18-5	Water;	85	
2-12	왁스	1	8002-74-2	Paraffin wax ; Para	80	
2-12	왁스	2	25322-68-3	α-Hydro-ω-hydro	20	

프로그램 _ 오류변경사항

"제품취급현황" 과 "구성성분정보"에서 유효성검사 진행 단계에서 오류를 수정한 경우,
오류로 인한 수정/변경 건 수 표시

※ CDR 프로그램 에서는 서식2 엑셀 파일로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사항만 수정가능
그 외의 정보는 수정 불가능

프로그램_ 제품 비공개 신청

① 비공개 원하는 제품/물질명 항목에 체크

② 선택한 제품/물질명에 대한 대안정보 입력

③유효성 검사

④ 다음

프로그램 _ 물질 비공개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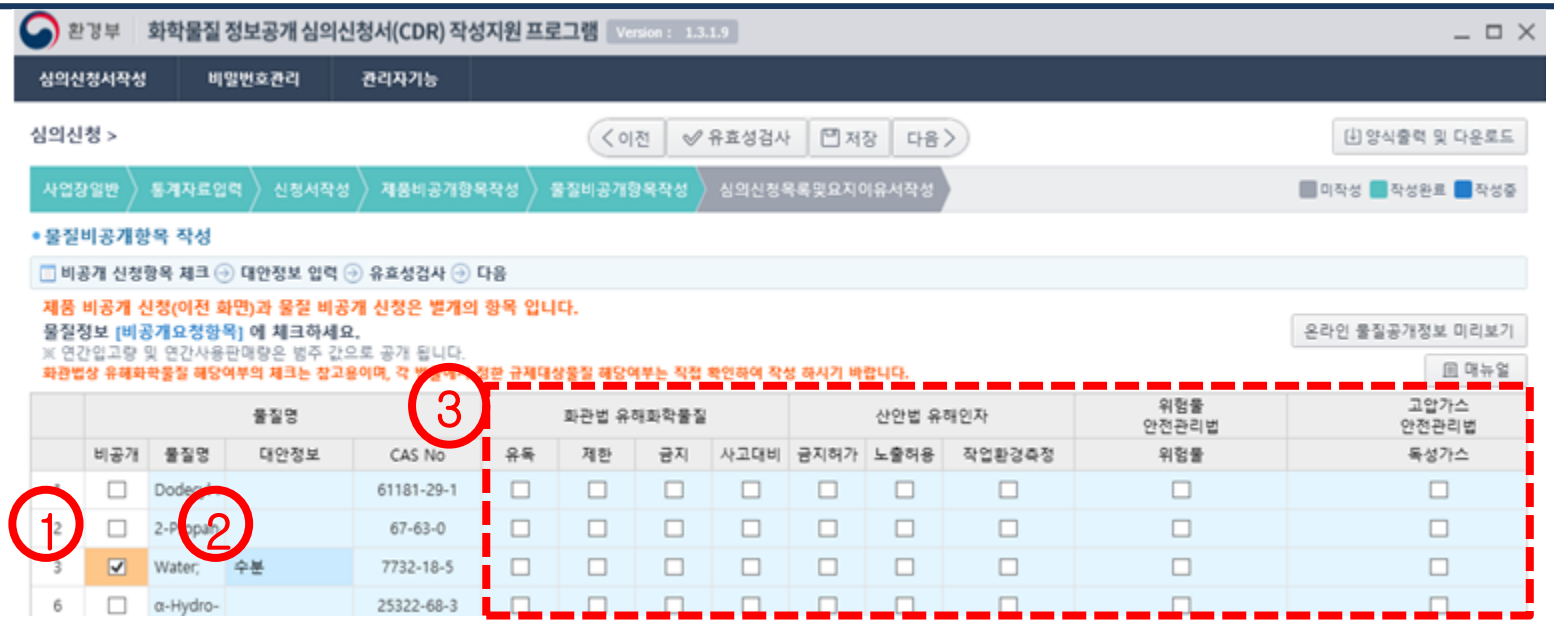

① 비공개 원하는 물질명 항목에 체크

② 선택한 제품에 대한 대안정보 입력

③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 자동 체크

산안법,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직접 체크

프로그램 _ 심의신청 요지 및 이유서

심의신청 목록

신청항목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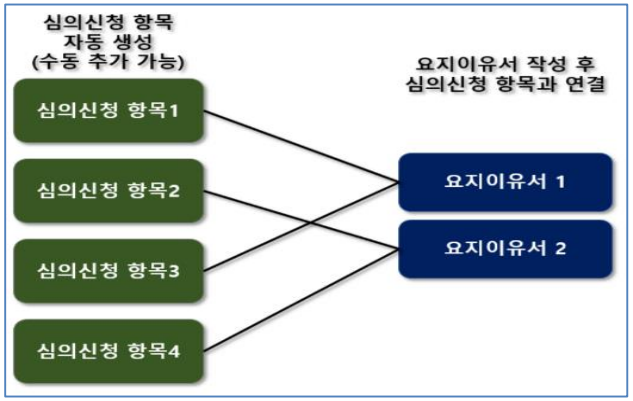

- ◆ 요지이유서 별도 관리
- ◆ 비공개 신청항목과 요지이유서의 **1:n** 관계 설정 지원
- ◆ 정보공개 심의신청 항목 자동생성(추가작성 가능)

프로그램 _ 엑셀양식 출력 다운로드

심의신청 자료 출력(서식3종/엑셀1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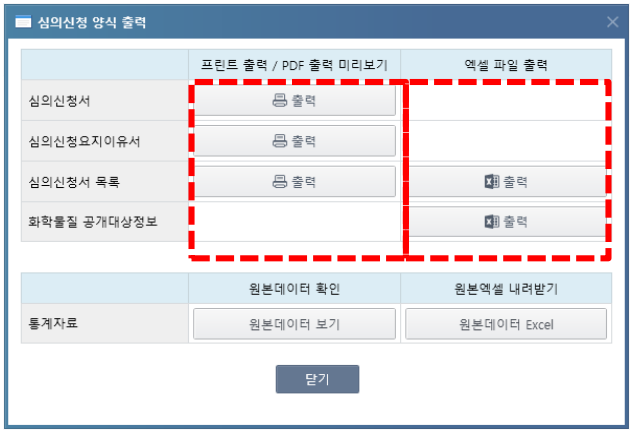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8. 11. 29.>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접수번호

상호(명칭)

신청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7.8.>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① 첨부서류 번호	1	② 심의신청 항목	AA-49B의 제품명 외 1건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7.8.>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목록

① 신청 항목	② 대안 정보	③ 공개대상 정보의 구분		④ 심의 신청요지·이유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자료			
		기본 공개	개별 공개		⑤ 영업비밀 입증서류			⑥ 기타 입증서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	
AA-49B의 제품명	####		○	1	123	123	111	
AA-70의 구성성분 중 1-Methyl-2-pyrrolidinone ; N-Methylpyrrolidone의 함량	1-100		○	2	1	2	3	
AA-71의 구성성분 중 1-Methyl-2-pyrrolidinone ; N-Methylpyrrolidone의 물질명	#####		○	1	123	123	111	
TA-40의 제품명	#####		○	2	1	2	3	

화학물질 공개대상정보 출력(엑셀파일)

(서식1. 사업장일반정보)

업체아이디	사업장명	대표자	작성자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대기배출시설종류	수질배출시설종류
14******	정*******	류**	김**	05*-***-****	대***	및 직물 호부	0	대****	성*****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사항없음	0종

(서식2. 최대보관저장정보)

업체아이디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 형태	
	보관 최대 규모 (범주)	저장 최대 규모 (범주)
142700521	01	06

(서식3. 제품취급현황)

업체아이디	제품명		혼합물여부	정보공개규정제3조 3항 해당여부	구성성분물질명		구성성분함량		보관시설현황보관형태		보관시설현황최대규모			저장시설현황저장형태		저장시설현황최대규모		
	제품명	비공개여부			물질명	비공개여부	함량(%)	비공개여부	보관형태	비공개여부	최대규모(범주)	최대량(ton)	비공개여부	저장형태	비공개여부	최대규모(범주)	최대량(ton)	비공개여부
142700521	DS330	비공개	혼합물질	비공개	lene glycol	공개	17.5	공개						저장	공개	06	6	공개

(서식4. 최대보관저장정보)

업체아이디	물질명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산안법 유해인자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간입고량		연간사용판매량	
	물질명	비공개여부	CAS No.	유독	제한	금지	사고대비	금지/허가	노출허용	작업환경측정	위험물	독성가스	범주	비공개여부	범주	비공개여부
142700521	lene glycol	공개	61181-29-1										07	공개	06	공개

프로그램 유지관리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프로그램 보급

배포Server
(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 요청

✓프로그램 다운로드
✓최신 버전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 설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정보마당-자료실을 통해 배포
(http://icis.me.go.kr/)

문의처

사용자

정보공개심의신청 제도문의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02-3019-6736,40

프로그램 문의

Korea Chemicals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36,40

IV. 점검사항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점검사항

- 기본공개와 개별공개 항목의 비공개를 모두 원하는 경우
  - 기본공개와 개별공개 항목 모두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 를 모두 제출

  - 기본공개(대국민공개) : 우선심의하여 “심의 중” 또는 심의 후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내용은 “비공개”

  - 개별공개는 개별청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된 심의신청서에 대해 심의

점검사항

-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제출서류
  - 기본공개대상 정보 : 제품명칭, **물질C의 명칭**
  - 개별공개대상 정보 : **제품A의 구성성분, 제품B 구성성분의 함량**

  - 해당 항목에 대해 영업비밀 요**청하려는 이유를 명시**하고,
  - 영업비밀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
    각 항목별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 부문별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예 : 제품B의 성분·함량을 영업비밀로 주장한다면, 제품B의 성분·함량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유용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

점검사항

-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
  - 생산하는 제품A의 질을 높이기 위해 AA-1을 사용**(영업비밀 사유)**
  - AA-1의 사용으로 경쟁사로부터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경제성·유용성)**
  - AA-1을 사용하는 것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비공지성)**
  -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비밀관리성)**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처

  - 심의신청서는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제출**

감사합니다